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0 선고 2018가단523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A영농조합법인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 2018. 5. 30.

판결 선고 2018. 6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358,290,173원 및 그 중 1,000,253,280원에 대하여 2016. 1. 1.부터 2018. 4. 1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, 2, 3 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4 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인우

별지